

>1분季은 변화,

2016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결과



목 차

I. 감사 실시 개요 / 2

II. 감 사 결 과 / 3

Ⅲ. 감사 결과 처분 지시 / 4

IV. 수 범 사 례 / 52

I. 감사실시 개요

- □ 감 사 개 요
 - 대 상 기 관 : 농업기술센터(농정과, 축수산과, 유통지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 **○** 감 사 기 간 : 2016. 10. 31. ~ 11. 11.(10일간)
 - O 감 사 범 위: 2013. 9. 1. 감사일 현재
 - 감 사 인 원 : 열린감사팀장 등 7인(1반)

□ 감 사 중 점 사 항

- O 주요시책 및 지시사항
-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 각종 공사관련 부실공사 및 부조리 예방
- 일반 행정업무 전반
- O 각종 농업사업 운영실태 점검
-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및 창의적 업무능력 제고
- 개선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

Ⅱ. 감 사 결 과

□ 행정상 조치

(단위 : 건)

	지	적 사	항		특수	수범	건의	민원
계	시 정	주 의	개선	현지	시책	사례	사항	사항
19	10	9			_	2	_	_

□ 재정상 조치

(단위 : 천원)

구 분	계	추 징	회 수	추 급	비고
계	14,646		9,246	5,400	
본 처 분	14,646		9,246	5,400	
현지처분	_		_		

□ 신분상 조치

(단위 : 명)

계	중 징 계	경 징 계	경고·훈계	주의	비고
13	_	_	3	10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단위:원)

연번	확인서 및 지적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비고
계	19건	시정 10 주의 9	14,646,746 9,246,760 5,400,000	계 회수 추급
1	○ 2015년 ◇◇◇◇ 특화사업(역량강화) 관련	시정	921,000	회수
2	○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주의		
3	○ 민간자본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부적정	주의		
4	○ 세외수입금 등 징수 관련	시정		
5	○ ◎◎◎ ◎◎◎◎ 조성공사 업무 소홀	시정	312,040	회수
6	○ ◇◇◇ ◇◇리 마을공동보관창고 지원사업 정산업무 부적정	시정	2,800,000	회수
7	○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일상감사 미실시	주의		
8	○ 아산□□□□ □□□□ □□센터 증축공사 (전기) 정산검사 소홀	시정	1,995,000	회수
9	○ 농기계 대여비 및 순회수리비 수입업무처리	주의		
10	○ 아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이행 미흡	주의		
11	○ 농업시설 불법사용 지도·단속 소홀	시정		
12	○ 국고보조금 편취에 따른 행정처분 미이행	시정		
13	○ △△△△△△△ 지원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14	○ ▽▽▽▽ 민간위탁 계약 부적정	주의		
15	○ ◎◎◎◎◎◎◎ 지원사업 등 정산검토 소홀	주의		
16	○ 공무원 각종 수당 집행 부적정	시정	3,163,000 5,400,000	회수 추급
17	○ 시설 유지관리 용역계약 미체결	시정		
18	○ 전산시스템 계약관리 및 선금지급 부적정	주의		
19	○ ◇◇◇◇◇◇ 보조금 정산 이자 관련	시정	55,720	회수

【제 목】 2015년 ◇◇◇◇ 특화사업 관련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시 정

【재 정 상】 921,000원(회수)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처워)

사 업 대상자	사업내용	사업비	대상자 선 정	교 부 신 청	교 부 결정일	정산일	비고
$\Diamond\Diamond\Diamond\Diamond\Diamond$	역량강화 컨설팅	110,000	15.3.4	15.3.6	15.3.10	15.12.24	

나. 위법 · 부당내용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교부결정 통지) 제2항에 의하면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동 조례 제17조(정산검사)에 의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정당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에게 동 사업 교부결정을 2015.3.10.일에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결정일 이전에 실시한 2015.02.10.일 '◇◇◇◇ 비전 선포식 참석'과 2015.02.13.일 '◇◇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한 주유비 등 921천원에 대하여도 동 사업비로 그대로 인정하여 2015.12.24.일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별첨] 신용카드 사용 및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나. 위법 · 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집행대상 직무활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소수의 일부직원이 아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가 소속, 직,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 ○○○○, ◇◇◇◇, □□□□□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 △현안업무 간담회, ▽▽▽▽▽ 및 지구지소장 간담회 급식 등과 소수의 일부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서장이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동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신용카드 결재 후 사용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용자가 소속, 직, 성명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사용자를 알 수 없게 처리하였습니다.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규를 준수하 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신용카드 사용 및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연번	머니머	과목	사용 일	사 용	용 자	,	사 용 현	황	사용내역	서명여부 및 부적정내역
선민	부서명	가득	일	직 급	성 명	금액	사용처	대상자	기사용대학	부적정내역
1	$\Diamond\Diamond\Diamond$	203 -03	2016- 4-14	농촌� ��	000	40		OOO 외3명	농어업발전기금 등 업무협의 등	서명 없음
2	$\Diamond\Diamond\Diamond$	203 -03	2016- 4-8	농촌◇ ◇◇	000	208		OOO 외13명	농산물가공센터 조성관련 등	서명 없음
3	$\Diamond\Diamond\Diamond$	203 -03	2016- 2-23	농촌◇	000	108		000 외7명	3농혁신 분과위 원회 개최 협의	서명 없음
4	$\Diamond\Diamond\Diamond$	203 -04	2016- 8-17	행정 ★ 급	000	96	****	000 외7명	농정 현안업무 간담회 등	서명 없음, 203-01,03 로 지급가능
5	$\Diamond\Diamond\Diamond$	203 -04	2016- 8-9	행정 ★ 급	000	63	****	OOO 와5명	농정 현안업무 간담회 등	서명 없음, 203-01,03 로 지급가능
6	$\Diamond\Diamond\Diamond$	203 -04	2016- 7-25	농촌◇	000	338	****	OOO 외13명	인사이동에따른 직원환영식 및 정보공유등	서명 없음
7	$\Diamond\Diamond\Diamond$	203 -04	2016- 7-13	농촌◇ ◇◇	000	470	****	OOO 외15명	전출직원송별식 및직원간정보공 유등	서명 없음
8	$\Diamond\Diamond\Diamond$	203 -04	2016- 6-30	농촌◇ ◇◇	000	474	****	OOO 외15명	신 규 직 원 격 려 및 직원간 정보공유등	서명 없음
9	000	203 -04	2015- 11-3	행 정 ★ 급	000	47		000 와명	업무추진간담회 급식비지급	서명 없음, 부서장지출
10	000	203 -04	2015- 11-4	행 정 ★ 급	000	33	****	000 와명	업무추진간담회 급식비지급	서명 없음, 부서장지출
11	000	203 -04	2015- 11-5	행 정 ★ 급	000	52	****	000 와명	업무추진간담회 급식비지급	서명 없음, 부서장지출
12	000	203 -04	2015- 11-10	행 정 ★ 급	000	48	****	OOO의 5명	업무추진간담회 급식비지급	서명 없음, 부서장지출
13	000	203 -04	2015- 11-26	행 정 ★ 급	000	28	****	OOO 와명	업무추진간담회 급식비지급	서명 없음, 부서장지출
14		203 -04	2015- 10-1	농업★ 급	000	102	****	ㅇㅇㅇ 외 4	공공비축 매입 업무 추진	서명 없음, 203-01,03 로 지급가능
15		203 -04	2015- 11-17	농업★ 급	000	52	****	ㅇㅇㅇ 외 4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	서명 없음, 203-01,03 로 지급가능

연번	부서명	과목	사용일	사용			사 용 현	황	사용내역	서명여부 및 부적정내역
	1 10			직 급	성 명	금액	사용처	대상자		구작성대학
16		203 -04	2015- 12-7	농업 ★ 급	000	85	$\Diamond\Diamond\Diamond$	OOO 외 4	고향마실페스 티벌 개최 관 런 업무 협의	서명 없음, 203-01,03 로 지급가능
17		203 -04	2015- 7-3	농촌� ��	000	30	$\Diamond\Diamond\Diamond$	OOO 외 2명	주요업무 담당 자 간담회급식	서명 없음, 부서장지출
18		203 -04	2015- 7-6	농촌� ��	000	50	$\Diamond \Diamond \Diamond \Diamond$	OOO 외 4명	주요업무 담당 자 간담회급식	서명 없음, 부서장지출
19		203 -04	2015- 7-7	농촌 ◇	000	63	$\Diamond\Diamond\Diamond$	OOO 외 4명	기술지원과 당면추진업무 간담회 급식	서명 없음, 203-01,03 로 지급가능
20		203 -04	2015- 7-27	농촌◇	000	104	$\Diamond\Diamond\Diamond$	○○○ 외 7명	기술지원과 팀장 및 지구 지소장 간담회 급식	서명 없음, 부서장지출
21		203 -04	2015- 8-3	농촌 ◇	000	42	$\Diamond\Diamond\Diamond$	○○○ 외 7명	농업인단체협 의회 임원 간 담회 급식	서명 없음, 203-01,03 로 지급가능
22		203 -04	2015- 8-17	농촌◇	000	32	$\Diamond\Diamond\Diamond$	○○○ 외 3명	기술지원과 지도기획팀 사기진작 간담회 급식	서명 없음, 부서장지출
23		203 -04	2015- 8-20	농촌 ◇ ◇◇	000	46	$\Diamond\Diamond\Diamond$	OOO 외 4명	지구지소장 간담회 급식	서명 없음. 203-01로 지급가능

【제 목】 민간자본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부적정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

(단위:처워)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보 조		사업비	농업용	
VI EI O	시비대등	시티기건	사업자	계	보조금	자부담	기자재
계			2명	113,330	65,000	48,330	45,237
●●●● 영농 정착 지원사업	육묘장 480㎡	2015.03.23. ~ 2015.04.30.	000	58,440	30,000	28,440	6,192
★★★★ 농산 물 생산기술시 범사업	비가림 하우스 2,640㎡	2015.04.15. 2015.05.10.	000	54,890	35,000	19,890	39,045

나. 위법 · 부당내용

○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제53조의3에 따르면 사업완료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 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였으며, 다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 경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정산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에는 투자비율에 따라 지자체 및 보조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환급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모두 국고로 귀속되어 지자체의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보조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 하였습니다.

○ 그러함에도 ◎◎◎◎, ◇◇◇◇에서는

위와같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비닐하우스용 필름 등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아 환급액이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자본보조사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세외수입금 등 징수 관련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 □□□□)

【행정상】시 정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별첨] 세외수입 등 미수납액 조치현황

나. 위법 · 부당내용

○ 「지방세외수입금의 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의하면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 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 ○○○○, ◇◇◇◇에서는 2001. 10. 25.일부터 2015. 11. 10.까지 정수결정한 세외수입금 등 총 804,230천원중 감사일 현재까지 20,533천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외수입금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미 징수한 세외수입금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세외수입 등 미수납액 조치현황

연번	부서명	납부자	세목명	부과일자	계(천원)	수납	압류	미조치	비고
계		32명			804,233	651	783,049	20,533	
1	0000	000	[이행강제금 (41-288115)]	2002-02-16	2,147			2,147	
2	0000	000	[그외수입 (41-294099)]	2012-05-08	785			785	
3	0000	000	[비료관리법 (41-288040)]	2010-09-16	1,600			1,600	
4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10-05-27	17			17	
5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10-05-26	173			173	
6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10-05-27	194			194	
7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10-05-27	75			75	
8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10-05-27	63			63	
9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10-05-27	166			166	
10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10-05-27	28			28	
11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09-04-10	961			961	
12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09-04-10	146			146	
13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10-05-27	44			44	
14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09-04-10	3,063			3,063	
15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10-05-27	38			38	
16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10-05-27	19			19	
17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10-05-27	15			15	
18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10-05-27	74			74	
18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10-05-27	74			74	
19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10-05-27	30			30	
20	0000	000	[기타잡수입 (41-294099)]	2010-05-27	117			117	
21	0000	000	[그외수입 (41-294099)]	2015-11-10	3,969			3,969	
22	$\nabla\nabla\nabla\nabla$	000	[그외수입 (41-294099)]	2015-11-10	6,469			6,469	
23	$\nabla\nabla\nabla\nabla$	000	[내수면불법어업과태 료 (41-288159)]	2011-09-29	879		879		
24	$\nabla\nabla\nabla\nabla$	000	[내수면불법어업과태 료 (31-288159)]	2001-10-25	150		150		
25	$\nabla\nabla\nabla\nabla$	★조합	[수산물원산지표시위법 (41-2881 60)]	2007-12-06	50	50			
26	*****	000	[그외수입 (41-294099)]	2014-07-02	782,020		782,020		소송중
27	*****	000	[축산물위생관리법 (41-288670)]	2011-05-19	340			340	
28	*****	000	[기타이자수입 (41-238099)]	2011-02-25	1	1			
29	*****	000	[기타이자수입 (41-238099)]	2011-02-27	_				
30		000	[기타이자수입 (41-238099)]	2011-02-25	_				
31		000	[그외수입 (41-294099)]	2015-03-27	300	300			

【제 목】 「◇◇◇◇ ◇◇◇◇ 조성공사」업무 소홀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시 정

【재 정 상】 312,040원(회 수)

【지적내용】

가. 현 황

사 업 명	도급금액 (천원)	계 약 체결일	공사기간	수급인 (도급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부족 정산액(원)	비고
◇◇◇◇ ◇◇◇◇◇ 조성공사	190,096	2015. 09.10	2015.09.11 2015.12.05	♠ ○	312,040	

나. 위법 • 부당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제2항¹)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3항에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제8조규정에 의

^{1) 2016. 2.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 후단에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2016.8.12)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공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 ◇◇◇◇◇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자(수급인)인 ㈜◆◆◆ ○○○이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2015.9.10) 부터 30일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서류가 312,040원 부족하게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채 사업을 마무리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과다지급한 312,04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리 마을공동보관창고 지원사업」 정산2)업무 부적정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시 정

【재 정 상】 2,800,000원(회 수)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비	보 조 결정일	보 조 사업자	사업기간	선 요청일	금 지급일	미정산 금 액3)
◇◇◇ ◇◇리 마을 공동보관 창고지원사업	100,000	2014. 05.15	♦♦ ♦♦♦ •••• •• ••• ••• ••• ••• ••• •• ••• ••• ••• ••• ••• •• ••• ••	14.05.19 ~ 14.10.08	14.05.19 14.06.03	14.06.09	2,800

※ 보조사업 부담비율 : 전액시비(100%)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2013.12.31)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14 민간자본이전(402목) 14-1 민간자본보조(402-01) 에 의하면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체 사업비중 보조사업자의 자비부담율이 30% 미만일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²⁾ 정산 : 상기 사업에서 정산이 가능한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건강,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가 해당

³⁾ 미정산된 금액에는 정산 항목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등 제세가 포함된 금액임.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 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 며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제7조 규 정에 의거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 고 제8조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 제3항에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 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 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 록 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 호, 2014.2.7, 행정자치부예규 제27호, 2015.10.12)⁴⁾ 제1장 제8절의 **"공사의 보 험료 사후정산등"** 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납부 여부 를 최종 확인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제1항에 의거 시장은 지방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 을 확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 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 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7호, 2016.10.6)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함에도 ○○○○에서는
 「2014년도」에 "◇◇◇ ◇◇리 마을공동보관창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 →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보조금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 ◇◇리 이장 ○○○이 임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 →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2차례(14.05.19, 14.06.03)에 걸쳐 ◇◇◇◇ ◇◇리 이장 ○○○○으로부터 선금 지급요청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4.6.9.일 선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 →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리 이장 ○○○ 개인 통장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 → 또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리 이장 ○○○)가 적정하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정산검사를 실 시한 후 보조금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 금 지급을 완료하여 2,80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다지급된 2,80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일상감사5) 미실시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별첨] 1억원이상 민간자본사업보조중 일상감사 미실시 현황(2015, 2016)

나. 위법 · 부당내용

- 「아산시 일상감사에 관한 규칙」제8조(감사의뢰) 제1항 규정에 의거 집행부서의 장은 별표의 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기준중 주요정책의 집행업무에 1억원 이상인 민간자본사업보조 업무를 시행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 ○○○○, ◇◇◇◇◇, □□□□□, ▽▽▽▽▽ 에서는 1억원 이상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업무인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15건(2015: 10건, 2016: 6건)에 대하여 시행에 앞서 일 상감사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⁵⁾ 일상감사 : 기관의 주요정책 집행업무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 ·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규칙 제2조 제1호)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아산시 일상감사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자본보조사업 일상감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억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업무중 일상감사 미실시 현황(2015년)

			사		단위:백만	원)		보 조	사 업	보 조	사 업		업무 관련지	ŀ
번호	사업명	총계			조금		자부담				^	담당자	 팀 장	과 장
		6 /1	계	국비	도비	시비	7177	결정일	기 간	사업자	T ^1	00/1		7 0
계		2,139	1,322	150	162	1,010	817							
1	친환경 벼 배재단지 조성	150	120		36	84	30	15.05.18.	15.01.14 15.12.31	≪ें≻खं	0000	000	000	000
2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사업	400	190	1	ı	190	210	15.9.25	15.09.25 15.12.31	◇ <a>>> > <a>>	*****	000	000	000
3	로컬푸드 직매장	299	200	I	I	200	99	14.6.20	14.06.20 15.11.25	< >>> > > > > > > = = = = = = = = = =	******	000	000	∞
4	로컬푸드 직매장	320	143	I	I	143	177	15.11.30	15.11.30 16.03.07	(A)(A)(A)(A)(A)(A)(A)(A)(A)(A)(A)(A)(A)(******	000	000	∞
5	신기술보급사업(생활문 화)	100	100	50		50		15. 4.29	15.04.29 15.11.30	농업회시법인 〈〉〉〉(주)		000	000	∞
6	소비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조성	100	100	50		50		15.03.31.	15.03.31. 15.12.07.	>>> 농업협동 조합	VVVV	000	000	000
7	소규모가공용쌀생산 및 가공제품기술시범	100	100	50		50		15.04.13.	15.04.13. 15.11.13.	>>> 농업협동 조합		000	000	000
8	가공용 아산쌀 생산, 유통 활성화 사업	170	119		51	68	51	15.06.11.	15.06.11. 15.12.31.	>>> 농업협동 조합		000	000	000
9	충남쌀 695프로젝트 실천 경영체 육성	250	125		37	88	125	15.04.09.	15.04.09. 15.12.07.	>>> 농업협동 조합		000	000	000
10	충남쌀 695프로젝트 실천 경영체 육성	250	125		38	87	125	15.04.09.	15.04.09. 15.12.30.	>>> 농업협동 조합	\\\\\\\\\\\\\\\\\\\\\\\\\\\\\\\\\\\\\\	000	000	∞

□ 1억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업무중 일상감사 미실시 현황(2016년)

	사업명	사 업 비(단위:백만원)					· 보조	사 업	보 조	사 업	업무 관련자			
번호		11	보조금			-) H-)					-IEI-I		-JJ.	
		총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결정일	기 간	사업자	부 서	담당자	팀 장	과 장
계		2,892	1,881	720	225	936	1,011							
1	로컬푸드 직매장	310	150			150	160	16.06.20	16.06.20 16.08.10	㈜OOOO리 지	0000	000	000	000
2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지원사업	1,900	1,140	570	171	399	760	16.03.30	16.03.30 16.12.31	◇◇농협	0000	000	000	000
3	축산냄새 저감시스템 구축지원	202	165	-	-	165	37	16.07.19	16.01.02 16.12.31	♦♦♦३००	****	000	000	000
4	감자기계화 생력화 생산시범	180	126	-	54	72	54	16.07.01	16.07.01 16.11.25	◇◇연구회 (한○○)		000	000	000
5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연계 시범	200	200	100		100		16.03.17	16.03.17 16.12.31	◇◇농협	~~~	000	000	000
6	들녘별 쌀경영체연계 국산보리밀 생산단지 시범	100	100	50		50		16.04.11	16.04.11 16.12.31	조○○	\\\\\\\\\\\\\\\\\\\\\\\\\\\\\\\\\\\\\\	000	000	000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시 정

【재 정 상】 1,995,000원(회 수)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천원)

	사	사업비		과다 지급액				
사 업 명	정산금액 ⁶⁾ (농정과)	감액 후 정산한금액7)	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자	사업기간	
아산□□□□ □□□□□센터 증축 공사(전기)	94,160	91,310	2,850	1,995	855	아산□□□ □협동조합	15.07.01 ~ 15.11.30	

※ 보조사업 부담비율 : 국비40%, 도비9%, 시비21%, 자부담30%

나. 위법 • 부당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제8조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⁶⁾ 정산금액 : ◎◎◎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아산□□농협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서)와 같이 집행된 것으로 정산검사하고 결과보고한 금액임.

⁷⁾ 아산□□농협에서 제출한 준공정산 내역서중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함에 따라 이를 전액 감액한 후 정산한 금액임.

또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제1항에 의거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다지급한 1,995,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농기계 대여비 및 순회수리비 수입업무처리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농기계 대여비 수입처리 미흡 145건, 농기계 순회수리비 수입업무 처리 173건 미흡

나. 위법 · 부당내용

- ○「지방재정법」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및 같은법 제63조(수납기관)에 의하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 할 때에 원인행위에 따른 징수결의서작성시 아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30조(회계문서의 날인)에 의거 날인하게되어있음
- 그러함에도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에서는 2015년 7월 2일부터 2016년 10월 까지 징수결의서에 담당자의 날인을 생략한 사실이 있으며, 징수내역 및 불입 영수증을 미첨부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수입금 수납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아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이행 미흡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농기계 소모품 수불대장과 부 품 수불대장의 결재선 이행 미흡

나. 위법 · 부당내용

- 「아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및 제4조(전결 사항) 별표8 의하면 농기계순회업무 부품수불대장 및 소모품수불대장 은 실·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임
- 그러함에도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에서는 2014년 ~ 2016년 10월 까지 별지3호(부품대장)와, 별지4호(소모품수불대장)를 작성하면서 붙임과 같이 과장 전결을 팀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아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장 작성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농업시설 불법사용 지도·단속 소홀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시 정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농업시설 불법용도변경 사용현황

농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사용자	불 법 사용현황	현재사용 용도
◇◇◇ ◇◇◇ 693번지	답	$2,545\mathrm{m}^2$	000	농업용시설 → 근생시설	건축자재 소매점

나. 위법·부당내용

○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5항 규정에 의거 농업용시설(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득한 후 허가 규정에 맞는 시설로 이용하여야 하나 현재 근생시 설(건축자재소매점)로 사용하고 있음.

농업용시설(버섯재배사)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없이 시설된 시설물이라도 건축 후 허가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사후관리 필요.

○ 그런데도 농지를 관리하는 ◎◎◎◎에서 위 현황과 같이 ◇◇◇ ◇◇◇ 693번지(답, 생산관리지역)에 "농업용 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허가목적에 반하는 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판매소)로 불법 용도변경 하여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건축법』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용시설물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시설에 대하여 허가목적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국고보조금 편취에 따른 행정처분 미이행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시 정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국고보조금 편취현황

보조사업자	성	명	재판결과	죄명	비고
◇◇◇◇◇ 영농조합	00)()	천안지원 2013△△▽▽▽호 2014.4.3. 선고, 2014.4.11. 확정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보조금 환 수 (9백만원)

나. 위법 • 부당내용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편취사건 재판 확정 결과통보 및 행정처분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장 형사제2부-1505(2014.07.14.)] 공문이 송달되어 재판결과 및 관련 법률에 의거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해당공문을 □□□□-14376(2014.7.15.)호로 접수하였고, 약 4개월이 지연된 □□□□-20722(2014.11.11.)호 및 □□□□-20796(2014.11.12.)호로 보조금 회수결의 및 회수 통보(2014.12.31기한) 하였으나,

기한 내 미수납 되었고, 미수납 즉시 재촉구 하여야 하나 5개월 후 축수산과-9684(2015.05.21.)호로 보조금 회수 2차 통지(2015.6.30 기한)를 하였으나 기한 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국보조조금을 회수하여 하나 감사시점까지 보조사업자의 재산 등을 조사하여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환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환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미 회수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아산△△△△△ 지원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보조금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워)

보 조 사업자	보 조 사업비	예산과목	변 경 사업비	예산과목	위반사항	비고
아산△△ △△△△	90	민간자본 보조	45	민 간 자본보조 (402-01)	민 간 자 본 보 조 금 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조 (402-01)	45	민 간 경상보조 (307-02)	사용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현황

(단위: 백만원)

변경전 사업내용	사업비	변경후 사업내용	사업비
합 계	100		100
- 체험관 증축 (132㎡)	100	- 체험관 개선 및 체험상품개발 - 마을 입간판 제작 등 - 캠핑장개선(놀이터) - 주방용품 등	30 45 15 10

다. 위법 · 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2항에 "지 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농업정책과-2199(2014.02.28.)호의 보조금 교부결정서의 교부 조건 가항에 "자본적 자금으로 경상적인 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 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농업정책과-10324(2014.10.22.)호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조건에 "사업비 교부결정서 조건을 준수 추진"할 것을 명시하여 변 경승인 하였습니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체험관 증축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 결정되었으나, 사업진행 중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된 경상적 사업비는 관련예산을 새로 편성하거나 자기부담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때는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와 사전 협의한 후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2항에 의거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자본적 자금의 경상적인 자금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비 교부결정서 조건을 준수"하라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공문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45,000천원(민간자본보조의 50%)을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경사업계획, 예산편성현황, 교부금교부신청서 등의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금교부결정 및 정산하여야 하나 업무미숙(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변경사업계획과 교부금교부신청서의 내용이 불일치함에도 교부금교부결정통지 하였으며, 예산편성이 부적정함에도 이를 변경치 아니하고 보조금을 정산 처리하는 등 사후관리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보조금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 민간위탁계약 부적정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계약 부적정 현황

(단위: 처워)

연 도	사 업 비	사 업 자	부 당 내 역	비고
계	139,564	2개 업체		
2013	11,384	(주)□□□□	- 제안서 공고 기간(8일)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 - 제안서 평가결과 미공고 - 정량적 평가를 위원평가로 이행 - 미협상 후 계약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내역 미 검토 - 업무미숙으로 인한 계약해지	
	21,780	(주)◇◇◇	- 제안서 공고 기간(7일) - 제안서 평가결과 미공고 - 정량적 평가를 위원평가로 이행 - 미협상 후 계약 - 준공서류 정산내역 미 검토	업체 변경
2014	106,400	(주)◇◇◇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 - 정량적 평가를 위원평가로 이행	

나. 위법 • 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 찰공고) 제1항에 의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 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입찰공고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공고토록 되어있으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가 완료된 후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를 선정하여 협상적격자에게 통지하고 협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안서평가 위원회 구성·운영의 경우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 만큼 번호를 추천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이상 선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합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 5조(승인 및 의회동의)에 의거 민간위탁사업의 결정 및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아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공고기간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있으나 기간(7일~8일)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추첨하여 20%이상을 다른 시도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고, 위원들은 정성적 평가만 가능하나 정량적인 부분도평가하였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를 미공고 하였습니다.

협상적격자 선정 후 미통지 및 협상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중간 및 준 공정산 내역을 성실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의회동의 및 아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하나 2013년 상반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 계약자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업체와 재계약하여, 2013.5.20 ~ 10.31까지 약 5개월 동안 아산장터 운영에 지장을 주는 등 민간위탁사업 운영 및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 지원사업 등 정산검토 소홀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보조사업 정산 현황

(단위: 처워)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내용	계	보조금	융자	자담	비고
아산시 ◇◇◇협회 (○○○)	지원 지원	33,000	23,100	0	99,000	
000	(사설지원	30,000	14,250	0	15,570	
000	◆◆ ◆◆시설지원	35,000	16,625	0	18,375	

나. 위법 • 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제3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8조(감독)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아산시 ◇◇◇협회외 2인의 보조금 청구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고 시

정사항이 있을 시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토록 촉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진 후 사업비 등을 집행하여야 하나, 보조사업 전용통장 임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의 통장내역을 확인하여 자담의 입금 및 출금 등을 확인하고 입출금 거래내역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누락된 통장내역 등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집 행하는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려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무원 각종수당 집행 부적정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시 정

【재 정 상】 8,563,000원[3,163,000원(회 수), 5,400,000원(추 급)]

【지적내용】

가. 부당지급 현황

(단위:처워)

연번	수당종류	성 명	지급액 (원)	적정액 (원)	과다 지급	과소 지급	지급 기간
계		8명			3,163 (6,003)	5,400 (6,900)	
1		000	20,000	지급불가 (자격 없음)	1,200 (4,040)		2011.11.~2016.10. (1999.12.~2016.10)
2	특수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000	20,000	10,000	340		2014.01. ~ 현재
3	가산금)	000	20,000	10,000	320		2014.03. ~ 현재
4		000	20,000	10,000	340		2014.01. ~ 현재
5	이친그미人다	000	50,000	40,000	340		2014.01. ~ 현재
6	위험근무수당	000	40,000	지급불가	423		2015.12. ~ 현재
7	가족수당	000	60,000	40,000	200		2016.01. ~ 현재
8	◇◇보조비	000	250,000	400,000		3,000 (4,500)	2013.11.~2015.06. (2013.01.~ 2015.06.)
9	(□□ 상당 지도관)	000	250,000	400,000		2,400	2015.07.~ 2016.10.

나. 위법 • 부당내용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9에 규정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 기술정보수당은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

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며,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중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및 기술직군 운전 직렬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기술사 : 월 5만원 이하 기능장 기사 : 월 3만원 이하
- 산업기사 : 월 2만원 이하 운전직 6 7급 : 월 1만원 이하
- 운전직 8 9급 : 월 2만원 이하
- 또한,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8의 9개 부문의 업무에 상 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당해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 가족수당은 배우자 및 연령 등 기준을 충족하는 직계존비속의 부양의 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소멸사유 발생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 공무원에 대하여 지침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며 4급 상당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매월 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의 현황과 같이

- ○○○(□□□□□□)은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이 없음에도 현재 조회가능한 전산기록상 19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월 2만원씩 총 40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 외 2인(운전7급)에게는 2014년 1월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월 1만원을 지급하여야하나 2만원을 지급하였다.
- 또한, ○○○(◇◇◇◇)는 지침 별표8의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에 따라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종사자(병종:4만원)에 해당하나월 5만원을 2014년 1월 부터 지급하였고, ○○○(◆◆◆◆)는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직접 담당하지 않음에도 위험수당월 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과)에게는 부양가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부당하게지급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4급 상당 지도관으로서 직급보조비를월 40만원 지급할 수 있으나 25만원으로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다지급한 3,163천원은 회수하시고 5,400천원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일려번호: 1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시설 유지관리 용역계약 미체결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시 정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시설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

(단위: 워)

지출 건명	지급기간	지급액	추 가 수선비	재 무 관 계약여부	공 채 미소화
계					175,000
	2013. 1. ~ 2013.12.	2,112,000	189,200	부	45,000
농기계 대여은행 화물용 승강기	2014. 1. ~ 2014.12.	"	907,500	"	45,000
와울용 등장기 관리비	2015. 1. ~ 2015.12.	"	778,000	"	45,000
	2016. 1. ~ 2016.10.	1,760,000	300,000	"	40,000

나. 위법 • 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 집행 기본원칙 중 하나로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을 집 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 다.'

또한, 임차료, 유지보수비 등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

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신청하는자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자,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자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지역개발 채권의 구체적인 매입 대상과 기준을 별표1에 지역개발 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제4항에 1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용역계약에는 대금 청구금액의100분의 2.5,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는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하며 산출결과 5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천원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조례개정(제3772호 2013.07.30)을 통하여 2013. 8. 1일부터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대금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 그러나 □□□□□ 에서는

위와 같이 농기계 대여은행 화물용 승강기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업체별 견적, 계약조건 등을 비교하여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이를 생략하고 다년간 동일금액을 매월 지급하였고, 유지관리 계약조건에 소액수선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수선비를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연간 총액 1백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의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지 않는 등 계약관리를 소홀히 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채 175,000원은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일려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전산시스템 계약관리 및 선금지급 부적정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시설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

(단위:워)

지출 건명	지 급 일	지급액	업체명	재 무 관 계약여부	비고
	2014. 04. 22.	2,000,000		IP	
	2014. 07. 14.	2,000,000	(주) 	"	
	2014. 10. 20.	1,560,000		"	
예찰정보시스템 서버	2015. 05. 27.	1,800,000		"	
WILL OLD IT	2015. 12. 14.	3,620,000		"	
	2016. 09. 05.	5,420,000		"	선금지급
$\Diamond \Diamond \Diamond \Diamond \Diamond \Diamond \Diamond$	2016. 04. 12.	440,000	(7)	"	
시설장비 세척 실시	2010. 04. 12.	170,000	$\Diamond\Diamond\Diamond\Diamond\Diamond$		

나. 위법 · 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 집행 기본원칙 중 하나로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을 집 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 다.' 또한, 임차료, 유지보수비 등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2조 및 제4조에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기성준공 후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확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필요한 사항을 선금 지급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 그러나 ▽▽▽▽▽ 에서는

위와 같이 �� �� 예찰정보시스템 서버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급하면서 서버이용료, 문자발송료, 통신요금 등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재 산정하여 매년 (분임)재무관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이를 생략하고 다년간 동일금액을 지급하였고, 2016년 9월 지급한 용역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제한된 선금지급 일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에 대한 용역비를 선 지급하면서도계약상대자로부터 보증서 등의 채권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반환사유발생 시 채권회수가 불투명하게 하는 등 예산집행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려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 보조금 정산 이자 관련

【부 서 명】 농업기술센터(◎◎◎◎)

【행정상】시 정

【재 정 상】 55,720원(회 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보조금 지급 및 이자 발생 현황

(단위 : 원)

년 도	보조사업자	사 업 비	이 자 발생내역	이 자 반환여부	Ы	ュ
계		231,231,640	55,720			
2013	아산◇◇◇ 협 동 조 합	69,729,660	25,570	뿌		
2014	업 등 ^소 입 (대표 ()()()	77,853,980	880	부		
2015		83,648,000	29,270	부		

※ 통장번호 : (농협) 351-0430-◆◆◆◆-03

나. 위법 • 부당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농림식품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의2,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 및 제 17조(구 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 2 개월 내에 사업을 주관하는 장에게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와 함 께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농업기술센터 ◎◎◎◎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아산◇◇◇협동조합(대표 ○○○)에 보조사업비 231,231,640월을 지원하여 □□□□□□□□을 운영하면서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검사와 함께 보조금 예치 이자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반환명령을 통해 세입조치하여야 하나 3년간의 보조금 예치 이자

55,720원에 대해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자 55,720원은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Ⅳ. 수범사례

① 악취민원 축산농가 소독 봉사

- 주변 정주여건과 조화·상생하는 악취없는 축산환경 조성
- 쾌적한 축산환경조성 및 가축분뇨 억제로 주변 밀집지역과 축산농가의 상생 도모

□ 사업개요

- ◇◇◇ ◇◇◇ ◎◎@, □□□ 일원 악취민원(상담민원, 집단 민원)발생 축산농가 분뇨냄새 저감
- 사육시설의 재래식 돈사 및 도시화로 인한 주거환경 변화로 악취 민워 상시 발생

□ 추진상황

○ 7월~8월 무더운 여름철 1조 2인이 중심되어 주말에 출근하여 악취민원 농가(◎@, □□□)에 악취탈취 소독을 함으로서 민원을 조 금이나마 해소 하고자 노력 함.

□ 기대효과

○ 축산농가의 악취를 저감 하여 주변 아파트 및 주민들과의 민원 발생 억제

작성자 : ♦◆◆ 축산행정팀장 농업6급 ⊗⊗⊗(☎ 3816번)

2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농산물의 지역순환형 소비를 통한 안전먹거리 공급 및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 보장 ⇨ 유통단계 축소로 직거래 유통구조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 ~ 2018. 12.

○ 사 업 비 : 37.4억원(국비 10 시비 16.5 기타 10.9)

○ 사업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희망농협 및 법인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및 참여농가 육성

□ 추진상황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 5개소

구분	매장명	위 치	규모 직매장	(m²) 작업장	개장일
1호점	△△농협	아산△△농협 하나로마트 內	165	136	'13.9.10
2호점	▽▽농협	▽▽농협 남성지점하나로마트 內	132	30	' 15.2.09
3호점	□□농협	□□농협 하나로마트 內	165	39	¹ 5.2.11
4호점	◇◇농협	◇◇농협 하나로마트 內	99	30	'15.8.28
5호점	◎◎◎빌리지	㈜◎◎◎빌리지 단독매장	165	13	'16.3.04

- '16. 8.10 ◇◇ ◎◎◎빌리지 로컬푸드 식당개장
-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시스템 구축 및 생산환경 사업추진
 - 로컬푸드 농산물 수집운반차량운영, 포장재 지원 등
-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 추진 : 735명

□ 기대효과

○ 지역내 농산물 순환체계 구축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작성자 : ♦♦♦ 아산푸드팀장 농업6급 ⊗⊗⊗(☎ 3706번)